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사회복지 시설의 대응 과제

목차

- I. 중대재해처벌법으로부터
안전한가
- II. 사회복지시설의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방법
- III. 정책제언

'24.1.27일자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회복지시설 확대

-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회복지시설은 최초 시행당시 50인 이상에서 최근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 법개정 이전에는 사회복지시설의 5%만이 적용대상(50인 이상 시설)이었으나, 법개정 이후 5인 이상-50인까지 적용되어 69%가 확대적용중
 - 사회복지시설에서도 매년 평균 7건 이상 사망사고 발생. 중대재해처벌법을 대비하지 않을 경우 시설장 법인대표 형사처벌 가능성 배제 못함

사회복지현장에서 대표·시설장은 '사전준수의무'철저 이행 필요

- ▶ 안전보건관리체계 준수 및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 이행 의무
 - 사전준수의무로 첫 번째 적용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의무는 ①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설정, ②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 마련, ③안전보건예산 편성 및 집행, ④안전보건책임자·관리감독자 등에 권한 부여 및 평가, ⑤안전보건에 관한 근로자 의견 청취, ⑥중대재해 발생시 대비 매뉴얼 구축임
 - 사전준수의무로 두 번째 적용되는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 이행점검은 ①근로자의 수에 따른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 이행 점검 및 미이행시 적절한 조치 수행, ②안전보건관계법령상 유해위험교육 실시 여부 점검임
- ▶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에 대한 철저한 이행과 더불어 사회복지현장에서의 필요한 실질적 구체적인 재해 대비 및 이행이 필요

정책 제언

- ▶ 사회복지시설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의 예산 및 인력 지원 필요



9 772982 554000
ISSN 2982-5547

I.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부터 안전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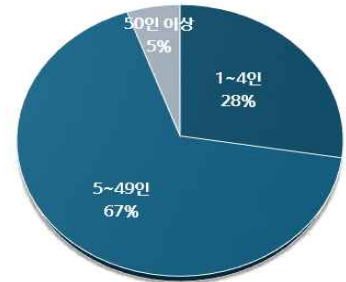
'24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 사회복지시설 대비 중요

'24.1.27.자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어 사회복지시설 72%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음

▶ 2022년 1월 27일 법 최초 시행 당시에는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됨

-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 대다수이므로 전체 5%(4,183개소)에 해당하는 시설만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았으며, 나머지 95% 시설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음

〈그림 1〉 사회복지시설 상시 근로자 현황



▶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가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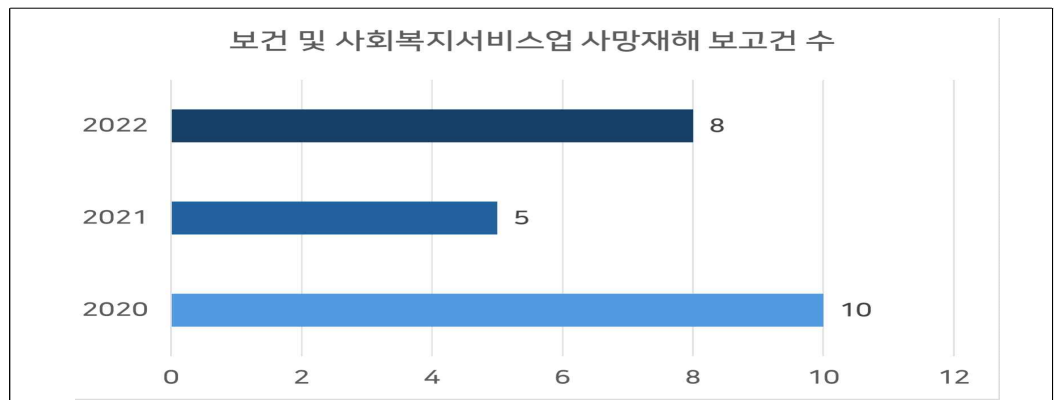
자료 : 고용노동부, 2022 사업체 노동 실태 현황

- 2024.1.27.부터는 전체 69%를 차지하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회복지시설(57,684개소)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음

사회복지시설에서도 중대재해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지 않는 경우 법인 대표, 시설장 등이 형사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음

- ▶ 사회복지시설에서도 매년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
 - 제조업, 건설업과 같은 고위험 사업장만큼은 아니지만 사회복지시설에서도 매년 평균 7건 이상의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을 일이 없다고 낙관하기 어려움

〈그림 2〉 사회복지시설 사망재해 발생 현황



자료: 고용노동부, 2020~2022 산업재해 발생 보고 현황

II. 사회복지시설의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방법

사회복지법인 대표 및 시설장은 '사전 준수 의무' 중점 이행

사회복지시설에서 중대재해 발생시 형사처벌 대상자는 시설장·법인대표

- ▶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중대재해사고 발생시 책임자는 위탁을 맡긴 지자체(지원 및 관리감독)가 아닌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수탁법인 대표·시설장
 - 중대재해사고 발생시, 사고책임자는 사고가 발생한 시설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업주(경영책임자)인 수탁 법인 대표와 해당 시설을 총괄 관리하는 시설장임
 -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자체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법인 대표 및 각 시설의 시설장은 중대재해 발생시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중대재해 처벌법상 의무사항 이행에 힘을 써야 함

사회복지법인 대표 및 시설장이 이행해야 할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은 무엇인가?

- ▶ 대표 및 시설장은 “사전 준수 의무”를 중점적으로 이행해야 함
 -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은 중대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사전 준수 의무)와 중대재해가 발생한 후에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사후 준수 의무)로 구분할 수 있으며, 아직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사전 준수 의무 2가지에 초점을 맞추어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이행을 하여야 함

〈표 1〉 이행시기에 따른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

구분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	이행 시기
사전 준수 의무	안전보건관리체계 준수 의무	재해 발생 전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 이행 점검 의무	
사후 준수 의무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조치 의무	재해 발생 후
	지자체 등이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조치 의무	

▶ 사전 준수 의무 (1)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표 2〉 사회복지시설에 적용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세부 의무사항	사회복지시설 적용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목표 및 경영방침 설정	적용
	안전보건 전담조직 설치	미적용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절차 마련	적용
	안전보건예산 편성 및 집행	적용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에 권한 부여 및 평가	적용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미적용
	안전보건에 관한 근로자 의견청취	적용
	중대재해 발생 시 대비 매뉴얼 구축	적용
	도급, 용역, 위탁업체 안전보건능력 평가 및 평가기준 마련	미적용

* 사회복지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사회복지시설(복지관 등) 기준

* 미적용으로 기재된 의무라 하더라도 기관 특성 등에 따라 일부 시설에서는 적용으로 변경될 수 있음.

II. 사회복지시설의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방법

안전보건체계 준수,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 이행점검 의무
사전 이행 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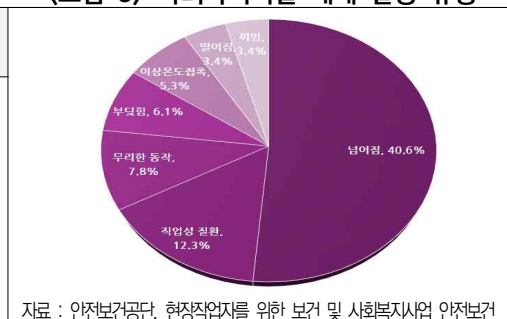
① 안전보건목표 및 안전보건 경영방침 설정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에서는 경영자의 안전보건 의식이 드러날 수 있도록 안전보건목표와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작성해 사업장에 비치해야 함(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1호)
- 안전보건목표 및 안전보건 경영방침 작성과 관련하여 최근 법원¹⁾은 안전보건목표와 경영방침은 각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체적, 실질적으로 작성되어야만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이행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
- 이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안전보건목표와 경영방침은 사회복지시설에서 많이 발생하는 재해 등을 제거, 축소하는 방향으로 작성되어야 함

〈표3〉 사회복지시설 안전보건목표 작성 예시

안전보건목표 작성 예시
<p>넘어짐 사고 발생 0건 달성</p> <p>1) 시설 내 계단에 안전난간 설치 완료 2) 출퇴근 전 시설 내 공간 정리정돈 실시 3) 상반기 내 시설 내 요철 등 보수 완료</p>

〈그림 3〉 사회복지시설 재해 발생 유형



② 안전보건 전담조직 구축

- 상시 근로자 수 500명 이상인 사업장 중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3명 이상 선임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 전담조직을 구축해야 함(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2호)
- 이때 안전보건 전담조직 설치 의무는 다른 의무와 달리 사업장 단위가 아닌 법인 단위로 판단하며, 안전보건 전담조직 설치 역시 개별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법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함
- 다만 사회복지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배치 의무가 없으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500명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안전보건 전담 조직을 두지 않을 수 있음(반대로 법인이 사회복지서비스업이 아닌 도소매업 등 다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한다면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안전보건 전담조직 설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

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과 규모 등이 반영되어야 하고, 그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2호 내지 제9호에 관한 것 등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 8. 25. 선고 2023고합8 판결)

II. 사회복지시설의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방법

사회복지현장에서는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절차 마련.
필요시 안전보건공단의
컨설팅 신청 가능

③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절차 마련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에서는 유해위험요인은 주기적으로 확인, 개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반기마다 유해위험요인을 확인, 점검하고 미흡한 점을 개선하여야 함(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본문)
- 다만 위와 같은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절차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의 위험성평가 실시로 갈음할 수 있으며(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단서), 반기마다 실시해야 하는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와 달리 위험성평가는 연 1회만 실시하면 됨²⁾
- 위험성평가는 (i) 근로자 인터뷰 등을 통한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파악 → (ii) 위험성 결정 → (iii) 감소대책 수립 → (iv) 감소대책 이행 → (v) 근로자에 결과 공유 및 자료 보존 순으로 진행하며, 각각의 진행 단계마다 이를 실시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표 4〉 위험성평가 단계별 구비서류

위험성평가 단계	단계별 구비서류
유해위험요인 파악	유해위험요인조사표, 근로자 면담 일지
위험성 결정	위험성평가표
감소대책 수립	
감소대책 이행	감소대책 실시자료(안전조치 실시 사진 등)
결과 공유	위험성평가 결과 공유 관련 내부 기안

〈그림 4〉 위험성평가표(사무업무 기준, 위험성수준 3단계 판단기법 사용)

위험성수준 3단계 판단법								
NO	대상	유해위험요인	위험성의 수준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 예정일	담당자
			상	중	하			
1	사무업무	사무실 내 이동 시 장애물에 의해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위험		√		사무실 내 청소 등 정리정돈 생활화	2024-06-30	홍길동
2		전자기기, 세단기 등 전기 사무용품 등의 사용 시 누전에 의한 감전 위험		√		감전 예방 위한 누전차단장치 설치	2024-06-30	홍길동
3		사무기구(세단기 등) 사용 시 손가락 끼임 등의 사고 위험		√		끼임 방지 방호장치 설치	2024-06-30	홍길동
4		중량을 취급 시 근골격계 질환 발생 위험			√	중량을 취급 시 이동대차 사용	2024-06-30	홍길동
5		사무실의 어두운 조명에 의한 눈의 피로 위험			√	사무실 내 일정 조도(300~600lx) 유지	2024-06-30	홍길동
6		핵심 사이의 좁은 통로로 이동 중 책상과 충돌 위험		√		핵심 간 일정거리 유지	2024-06-30	홍길동
7		장시간 업무에 의한 스트레스			√	스트레스 해소 위한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운영	2024-06-30	홍길동
8		사무실 내 장시간 에어컨 및 히터 사용으로 인한 고온 및 저온 환경의 건강장해 위험			√	실내 적정온도(19~26도) 유지	2024-06-30	홍길동
9		장시간 컴퓨터사용으로 인한 VDT증후군 발생 위험			√	작업 도중 스트레칭 수시 실시	2024-06-30	홍길동

2) 위험성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해당 절차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모두 실시하고 이에 더하여 그 실시 결과를 경영책임자들이 보고받았다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반기 1회씩 연 2회 모두 실시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FAQ)

II. 사회복지시설의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방법

사회복지현장에서
안전보건 인력 선임
및 안전보건예산
별도 편성 및 집행
필요

〈그림 5〉 감소대책 실시자료(사무업무 기준)

감소대책 실시표					
세부항목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감소대책		시행일	담당자
		실시 전	실시 후		
사무업무	사무실 내 장애물로 인해 미끄러지거나 넘어갈 위험			24.06.01.	홍길동

- 위험성평가가 처음이거나 실시에 어려움이 있다면 “위험성평가지원시스템 (kras.kosha.or.kr)”을 통해 실시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 시설이라면 해당 사이트를 이용해 안전보건공단의 무료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음

④ 안전보건예산 편성 및 집행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는 매년 안전보건인력 선임 및 안전조치 등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예산을 편성한 용도대로 집행하여야 함(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4호)
- 안전보건예산에는 시설물 안전점검비용, 안전교육훈련비, 안전물품 구입비, 건강검진 실시비, 안전진단 및 관련 컨설팅 비용, 안전시설 개선 및 설치비 등이 포함되며, 인건비에 해당하는 산재보험료나 안전보건과 무관한 교육이나 설비 도입 비용은 포함되지 않음

〈표 5〉 안전보건예산 세부 항목

구분	안전보건예산 항목
1	설비 및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비용
2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훈련비용
3	안전관련 물품 및 보호구 등 구입비용
4	작업환경 측정 및 특수건강검진 비용
5	안전진단 및 컨설팅 비용
6	위험설비 자동화 등 안전시설 개선비용
7	작업환경 개선 및 근골격계질환 예방비용
8	안전보건 우수사례 포상 비용
9	안전보건지원을 촉진하기 위한 캠페인 비용

자료 : 고용노동부 2022.03. 경영책임자와 관리자가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

- 안전보건예산을 편성한 시설에서는 연초 안전보건예산 편성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연말에는 편성한 안전보건예산을 목적대로 집행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예산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함. 결산서에는 실제 지출한 안전보건예산 금액과 연초에 편성한 안전보건예산 금액을 모두 기재하도록 하며, 만일 실제 지출 금액과 편성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 차이가 발생한 이유까지 기재해두는 것이 바람직함

II. 사회복지시설의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방법

사회복지현장에서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시설장이 됨

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등 권한 부여, 평가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임할 의무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선임 후 이들이 업무 수행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권한과 예산을 부여해야 하며, 반기 1회마다 이들의 안전보건업무 수행 능력을 평가해야 함(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5호)
-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관리감독자는 상시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모든 사회복지시설에서 선임하여야 함.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업무 일부를 도급 처리하는 사업장에서 선임하여야 하는 인력이므로 업무 도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선임하지 않아도 됨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시설장이 그 역할을 하여야 하며, 관리감독자는 소속 직원들은 직접 지휘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가 되어야 하므로 팀장급 관리자 이상에서 선임하여야 함(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제16조)

〈표 6〉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구분	선임의무 있는 사업장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상시 근로자수 300명 이상 사업장	시설장
관리감독자	모든 사업장	팀장급 이상 관리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 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없음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를 선임한 시설에서는 이들이 안전보건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부여해야 하며, 이들이 안전보건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반기 1회마다 점검, 평가해야 함

〈표 7〉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평가표 작성 예시

구분	담당업무(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항 각호)	미흡	보통	양호
1	산재예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산안법 제25조, 제26조)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산안법 제29조)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적격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10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한 근로자의 건강장해 방지 등에 관한 사항			

미흡 : 법령에서 정한 업무를 일부 수행하지 않음.

보통 : 법령에서 정한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함.

양호 : 법령에서 정한 업무를 적정히 수행함으로써 설정한 안전보건목표를 달성함.

II. 사회복지시설의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방법

안전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의 평가표
작성.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의무는 없음

〈표 8〉 관리감독자 평가표 작성 예시

구분	담당업무(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제1항)	미흡	보통	양호
1	소속 팀 내 위치한 기계·설비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소속 팀 내 위치한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소속 팀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소속 팀의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5	위험성평가를 위한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개선조치 시행에 참여			

미흡 : 법령에서 정한 업무를 일부 수행하지 않음.

보통 : 법령에서 정한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함.

양호 : 법령에서 정한 업무를 적정히 수행함으로써 설정한 안전보건목표를 달성함.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에 대한 평가는 직근 상급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경우 법인 대표자, 관리감독자의 경우 시설장)가 실시하며, 평가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와 제16조에 명시되어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의 업무를 얼마나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가 됨

⑥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 중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 이른바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선임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이들을 법에서 정한 기준만큼 선임, 배치해야 함(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6호)
- 사회복지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안전보건 전문인력 선임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전문인력 선임 의무도 발생하지 않음
- 다만 노인 일자리 사업 전담 기관 등 사회복지시설이지만 사회복지서비스업 외 카페, 편의점 등 소매업이나 음식점업 등 다양한 업종의 사업을 하는 시설에서는 근로자 수에 따라 안전보건 전문인력 선임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
- 안전보건 전문인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 관련 학위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로 선임해야 하므로, 안전보건 전문인력 선임의무가 있는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자격을 갖춘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신규채용하거나 안전보건관리 전문기관에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업무를 관리 위탁해야 함. 단,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경우 안전보건 관련 학위나 자격이 없더라도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을 수료하였다면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II. 사회복지시설의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방법

사회복지현장에서
안전, 보건에 대한
종사자 의견 청취 및
필요 조치를 실행까지
마쳐야 함

〈표 9〉 안전보건 전문인력 자격요건

안전보건 전문인력	자격요건
안전관리자	1.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2.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3.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등
보건관리자	1.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2. 의사, 간호사 3.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등
안전보건관리담당자	1. 안전관리자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2. 보건관리자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3.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자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 [별표6], 제24조 제2항

㉞ 안전보건에 관한 근로자 의견 청취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은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관한 종사자의 의견을 듣고,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7호 본문)
- 안전보건에 관한 근로자 의견 청취는 간담회, 사내 건의함 마련, 팀 회의, 온라인 시스템 활용 등 사업장에서 실시하기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실시하면 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의무가 있는 사업장³⁾에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여 매 분기 안전보건에 관한 심의·의결을 하는 것만으로도 안전보건 의견에 관한 청취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음(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7호 단서)

〈그림 6〉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그림 7〉 안전 제안함 설치 예



자료: (좌) 고용노동부, 2022.08.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우수사례집 10p
(우) 고용노동부, 2022.08.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우수사례집 36p

- 안전보건 의견을 청취한 시설에서는 그 중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의견을 실행에 옮기고 그 실행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점검까지 마쳐야 중대재해처벌법상 의견 청취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음.

㉟ 중대재해 발생시 조치 매뉴얼 구축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에서는 중대재해 발생 시 취해야 할 조치를 담은 매뉴얼을 작성하여 사업장에 구비해야 하며, 구비한 매뉴얼을 가지고 반기 1회마다 중대재해

3) 사회복지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 300인 이상인 경우부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의무 발생(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II. 사회복지시설의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방법

사회복지현장에서
중대재해 발생시 대응
매뉴얼 작성 및 기관
내 비치 필수

발생 상황을 가정한 비상 대피훈련을 실시하여야 함(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8호)

-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 매뉴얼은 (i) 작업중지 → (ii) 근로자의 신속한 대피 → (iii) 위험요인의 제거 → (iv) 재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 (v)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실시 순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작성한 매뉴얼은 사업장에 비치하여 종사자 전원에게 공유함은 물론 반기 1회마다 매뉴얼 내용을 바탕으로 한 비상 대피훈련을 실시해 종사자들이 매뉴얼 내용을 실제 재해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비상 대피훈련 시 훈련 내용은 비상정지 버튼의 위치와 작동법, 비상 대피로 및 관계기관 연락체계 파악, 재해별 응급조치 방법 등으로 구성하며, 화재 대피훈련을 실시하는 시설이라면 화재 대피훈련과 함께 비상 대피 훈련을 실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음

〈그림 8〉 중대재해 발생 대비 비상 대피훈련 실시



자료: (좌) <https://www.s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296>, 서울로컬신문, 성동구, 성동안심사가 중대재해 대응 모의훈련 실시, 2022.05.20 10:19

(우) <http://www.mone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8207>, 메디칼업저버, 동아제약, 중대재해 대응 모의훈련 실시, 2023.11.28. 09:13

⑨ 도급, 용역, 위탁업체 안전보건능력 평가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 중 도급, 용역, 위탁업체를 사용하는 시설에서는 시설과 도급, 용역, 위탁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안전보건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업체를 반기 1회씩 평가해야 함(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의 적용을 받는 도급, 용역, 위탁업체란 사내 하도급 등 사업장 내 주된 업무를 도급, 용역, 위탁 주는 경우를 의미하며,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건물관리업체와 위탁계약을 맺은 경우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건물관리업체 등의 안전보건능력까지 평가해야 되는 것은 아님

▶ 사전 준수 의무 (2) :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 이행 점검

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 이행 여부 점검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은 반기 1회씩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계법령 의무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이행하지 않은 의무가 있는 경우 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2호)

II. 사회복지시설의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방법

근로자수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사항 상이

- 여기서 안전보건관계법령이란 산업안전보건법 및 항공안전법, 선박안전법 등 근로자의 안전과 관련된 모든 법령을 의미하나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에서 적용되는 안전보건관계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 하나이므로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사항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면 된다고 보면 됨
- 사회복지시설에서 이행해야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사항은 아래와 같음. 아래의 의무사항 중 근로자 수에 따라 각 시설에서 부담하는 의무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이행했는지 점검해야 함. 점검 결과 이행하지 않았다면 인력 선임의 경우 적정 인력을 선임하여야 하며, 안전조치 미이행의 경우 안전시설 설치 또는 안전예산 확보 등 안전조치 이행에 필요한 인적, 물적자원을 투입하여야 함

〈표 10〉 사회복지시설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사항

구분	근로자 수	적용 의무사항
1	300인 이상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안전보건관리규정 제개정
2	20인 이상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3	1인 이상 사업장	관리감독자 선임
		법령 요지 게시
		위험성평가 실시
		안전, 보건조치 실시
		중대재해 발생보고
		근로자 건강진단

②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유해위험교육 실시 여부 점검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은 반기 1회씩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유해위험교육의 실시여부를 점검하고 실시하지 않은 경우 실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3호 내지 제4호)
-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말하는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유해위험교육이란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위험작업시 교육, 항공안전법상 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선박안전법상 위험물 안전 운송 교육 등을 말하나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이러한 유해위험작업을 실시하지 않으므로 사회복지시설에서 해당 의무는 사실상 이행하지 않더라도 무방한 의무에 해당한다고 하겠음

▶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실시 주기 및 자료 보존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및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 이행 점검 의무 실시 주기는 통상적으로 반기 1회 또는 연 1회이나 의무사항마다 실시 주기가 조금씩 다르므로 시설에서는 아래와 같은 표를 활용해 제때 의무 이행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며, 의무 이행 자료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실시일로부터 5년간 보존하는 것이 필요함(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3조)

II. 사회복지시설의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방법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위험성 평가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의무 이행 철저 관리

〈표 11〉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 실시 주기

의무사항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안전보건목표, 경영방침 설정	●											
위험성평가 실시				●								
안전보건예산 편성 및 집행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평가						●						●
안전보건 의견청취						●						●
중대재해 발생 대비 대피훈련 실시						●						●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 이행 점검						●						●

* 안전보건예산 편성 및 집행의 경우, 연초에 편성의무, 연말에 결산(집행)의무 실시

최근 판결을 살펴보면 시설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 중 제3호와 제5호에 특히 신경 써야 하며 사업장 특성을 고려한 실질적 의무 이행을 해야 함

▶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 중 제3호 및 제5호의 이행 및 자료 보존에 중점을 두는 것이 필요

- 최근 나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관련 판결 대부분 제3호(위험성평가)와 제5호(안전보건인력의 선임 및 평가) 의무 위반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므로 시설에서는 여러 의무 사항 중 위험성 평가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안전보건인력의 업무 능력 반기 1회 이상 평가 의무 이행에 좀 더 신경을 기울여야 하며 해당 의무 이행과 관련된 자료들은 모두 빠짐없이 보존해야 함.

〈표 12〉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판결 선고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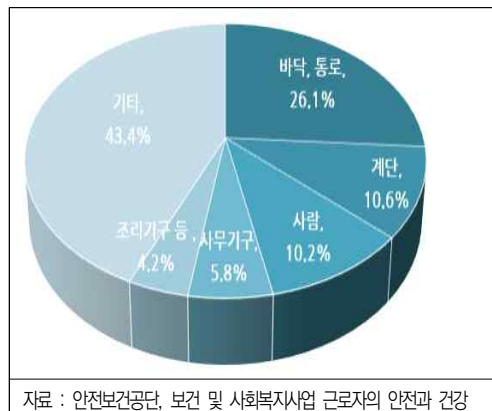
구분	사건 번호	판결 선고 내용	위반 의무사항
1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22고단3254	대표이사: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법인: 벌금 3천만원	제3호, 제5호, 제8호 위반
2	창원지법 마산지원 2022고합95	대표이사: 징역 1년 법인: 벌금 1억원	제5호, 제9호 위반
3	인천지법 2023고단651	대표이사: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법인: 벌금 5천만원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7호, 제8호 위반
4	창원지법 마산지원 2023고합8	대표이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법인: 벌금 5천만원	제1호, 제4호, 제5호, 제9호 위반
5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22고단 3255	대표이사: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법인: 벌금 2천만원	제3호, 제5호, 제9호 위반
6	서울북부지법 2023고단2537	대표이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법인: 벌금 3천만원	제1호, 제3호, 제5호, 제7호 위반
7	제주지법 2023고단146	대표이사: 징역 1년2월 집행유예 3년 법인: 벌금 8천만원	제1호, 제3호, 제5호, 제7호, 제8호 위반
8	창원지법 2022고단1429	대표이사: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법인: 벌금 2천만원	제3호, 제5호 위반

II. 사회복지시설의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방법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이행은 실질적,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특히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업무능력 평가는 반기 1회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연 2회 실시한 평가자료가 모두 갖추어져야 하며, 일반적인 직무 관련 인사평가와는 별도로 구분하여 실시되어야 평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이행은 형식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되며 실질적,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최근 법원은 사업장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반적인 안전보건목표나 위험성평가 매뉴얼을 설정한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는 등 서류만 형식적으로 구비하는 방식의 의무 이행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음
 -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는 사업장 특성을 반영하여 구체적·세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바, 시설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재해 유형은 무엇인지, 가장 위험한 요인은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하고 이를 제거·축소하는 방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필요함

〈그림 9〉 사회복지시설 내 주요 위험요인



〈예시〉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이행 방향 설정

1. 안전보건목표 설정
(바닥, 계단에서의 미끄럼 방지)
2. 유해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
(바닥, 계단 내 미끄럼 원인 제거 → 미끄럼 방지 타일 설치 등)
3. 안전보건예산 편성 및 집행
(안전보건예산 내 미끄럼 방지 타일 설치 비용 편성)

- ▶ 사후준수의무 : 중대재해 발생 후 실시해야 하는 의무사항으로 ①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조치 의무, ②지자체 등이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조치 의무
 - 또한 재해 발생의 구체적인 유형과 사례에 따라 기술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본 고에서는 다루지 않음

사회복지현장에 적합한
유해위험 요인 발견
및 개선노력 필요.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을 위한 예산 및
인력 지원이 필요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를 위한 사회복지시설의 유해위험 요인 발견 및 개선을 위한 노력 필요

▶ 유해위험요인 발견 및 개선을 위한 주기적인 관심과 노력 필요

-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가 중대재해로 발전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 제거하여 재해를 예방하자는 데에 있으므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 이행 시에는 유해위험요인 발견 및 개선에 중점을 두는 것이 필요함
- 특히 위험성평가 등 유해위험요인을 직접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의무사항을 이행함에 있어서는 과거 평가 내용을 다음번 평가에서도 그대로 활용하는 등의 형식적인 실시가 아니라 평가 시기마다 근로자 면담, 사업장 점검 등을 통한 적극적, 실질적인 실시가 이루어지도록 사회복지시설 실무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

시설의 원활한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이행을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의 예산, 인력 지원 필요

▶ 적극적 안전보건조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별도의 안전보건예산 부여

-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안전보건예산을 별도로 부여받고 있지 않아 안전시설 설치 등 적극적인 안전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지자체 차원에서 안전보건예산 편성 지원 필요
- 다만 지자체 차원의 안전보건예산 편성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만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 안전보건예산 편성 내역 및 집행 내역을 지자체에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가 마련되어 지자체에서 안전보건예산이 그 용도에 맞게 집행되고 있는지 확인(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 시설 자체 구인이 어려운 안전보건 전문인력에 대한 지원책 마련

- 노인 일자리 사업 등 사회복지서비스업 외 다양한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일부 시설에서는 근로자 수에 따라 안전보건 전문인력 선임 의무 발생 가능
- 그러나 이들 시설에는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자격을 갖춘 내부 인력이 없어 안전보건 전문인력 선임의무가 발생한 경우 전문인력 업무를 외부 업체에 위탁할 수밖에 없음
- 비영리기관인 사회복지시설에서는 법인 자부담으로 위탁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바, 이들 시설이 안전보건 전문인력 선임의무 이행을 하기 위해선 지자체 또는 국가 차원에서 안전보건 전문인력 위탁관리비용 지원 또는 안전보건 전문인력 파견 등이 필요